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세외에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그 징수에 관해서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기 보다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도록 함.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의 미납요금 등의 징수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었으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세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

중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요금의 미납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그 절차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올바른 개정으로 판단됨.

붙 임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